

구미시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과태료 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3.12.

제 출 자 : 구미시장

1. 제정이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음식점·목욕장·쇼핑센터·매장 등에 대하여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주민참여를 통한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사업장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를 도입·운영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가. 1회용품 사용규제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함(안 제2조).
- 나.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피처분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함(안 제3조).
- 다. 과태료의 처분 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제1항 내지 제6항).
- 라.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및 별표1).
- 마. 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바. 신고포상금 제외 대상 및 지급의 제외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제15조).
- 사. 신고자·신고방법·신고서 처리절차·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제11조, 제13조, 제14조).
- 아. 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관련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
-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 : 환경부
-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표준안 : 환경부

5. 참고사항 : 입법 예고대상임

구미시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과태료 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같은법시행령 제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와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시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별표1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조(의견청취 등) 시장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4조(과태료의 처분 통지) ①시장이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 결과 의견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과태료처분 통지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 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10일이내로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취소(변경)통지서에 의거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1의 기준에 의거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제8조(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①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는 위반회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한다.

③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시장으로부터 위반사실확인을 요청 받고 10일이내에 동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할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여 부과한다.

제9조(신고포상금 제외대상) 누구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음료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2.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 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소에서 A4규격(210mm×297mm) 또는 1,000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소에서 1회용 봉투·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제10조(신고자) ①신고자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②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위반행위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제11조(신고방법) ①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우편접수 포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함)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비디오 테이프 포함)등 증거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신고서를 접수한 시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 하단의 신고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우편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시장은 접수된 신고서(사진 포함)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전화 또는 방문을 요청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곤란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

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제13조(신고서 처리 등) ①시장은 신고내용의 신빙성·중복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일부터 3일 이내에 위반사업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실확인요청서를 받은 위반사업자는 같은 서식 하단의 사실확인회보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자기의 위반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감액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위반사업자에게 발부하고,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④시장은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위반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거나, 당해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된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항을 확인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및 위반사업자의 의견과 제출된 증거물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별지 제12호서식에 담당공무원의 의견을 기재한다.

⑥시장은 제5항의 담당공무원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명이 난 경우나, 제3항의 감액과태료 납부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하고,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⑦제6항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위반행위자는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의 이의신청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 ①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경우는 감액과태료고지서가 발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다투는 경우는 신고자의 입증자료를 검토하여 담당 공무원이 신고사항이 사실이라고 판명하여 위반행위자에게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 날부터 7

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15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신고된 위반행위가 법령위반이라고 입증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제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위반행위신고서를 제출한 신고자가 있는 경우
3.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4. 피신고 사업장이 위반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
5.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6.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7.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신고자의 보호) 시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신고포상금 예산의 확보) 시장은 신고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일반회계에 편성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4. 1. 1부터 시행한다.

[별표1]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제2조 관련)

(단위 : 만원)

과 태 료 부 과 대 상	부과금액			포상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 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법 제10조)				
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100	200	300	20
(2) 객실과 객석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50	100	200	10
(3)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30	50	100	7
(4)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10	30	50	3
나. 목욕장, 숙박업소(객실 7실 이상)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1) 객실50실 이상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의 목욕장인 경우	100	200	300	20
(2) 객실 21실 이상 50실 미만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하의 목욕장인 경우	50	100	200	10
(3) 객실 20실 이하의 숙박업소인 경우	30	50	100	7

과 태 료 부 과 대 상	부과금액			포상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다.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 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300	300	300	30
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중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재활용 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	300	300	300	30
마.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자(다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제외한다)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100	200	300	20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50	100	200	10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65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30	50	100	7
바.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한 때				
(1) 매장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0	200	300	20
(2)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50	100	200	10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0	50	100	7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0	30	50	3

과 태 료 부 과 대 상	부과금액			포상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재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자	100	200	300	20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자	50	100	200	10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65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자	30	50	100	7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자	10	30	50	3
아.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 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100	200	300	20

과 태 료 처 분 통 지 서

제 호
수 신
제 목 : 과태료 처분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장소 :

다.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
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부 : 과태료 납부서 1부.

200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

[별지 제2호서식]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

(갑)

(처분기관 보관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위반행위자	성명		주 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위반일시	. . . :		위반법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위반내용			발부일자	. .		
위반행위자 서명		주민등록번호		단속공무원 확인		

특기사항

168mm×118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을)

(피처분자 통지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위반행위자	성명		주 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위반일시	. . . :		위반법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위반내용			발부일자	. .		
위반행위자 서명		주민등록번호		단속공무원 확인		

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제1항제3호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구 미 시 장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병)

(수납은행 보관용)

과 태 료 납 부 서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 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세입자계좌번호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구미시 소재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농협					
수 납 인					
		(부과권자)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정)

(개인 통지용)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 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 까지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구미시 소재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농협					
수 납 인					취 급 자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무)

(처분기관 통보용)

과태료납부 영수필통지서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 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구미시 소재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농협					
수납일자도장	구 미 시 장 귀하				

168mm×118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제 호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납 부 의무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과태료납부통지서 번호			
⑤ 위 반 사 항			
⑥ 과태료 금액	원	⑦ 당초 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률 제42조제4항에 의거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			

제	호	과 태 료 부 과 취 소 (변경) 통 지 서	
주 소 :			
성 명 :		귀하	
① 고 지 금 액	② 취소(변경)액	③ 차 액	비 고
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 청 인	① 성 명	(한글) (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	④ 부 과 기 관		⑥ 납부통지서 번호	
	⑤ 고지받은 일자		⑦ 과태료 금액	
	⑧ 과태료처분사유			
⑨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 사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구 미 시 장 귀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제 호

수 신 :

발 신 : 구 미 시 장

제 목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2조와 관련입니다.

2.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
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 에 대한 이의 제기자	① 성 명	(한글) (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과 태 료 처분 내역	④ 고지일자		⑥ 과태료 금액	
	⑤ 부과기간		⑦ 이의제기일자	

- 첨부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별지 제7호서식]

과 태 료 수 납 부											
① 일련 번호	② 통지서 번 호	③ 과 태 료 처분통지일	④ 독촉장 발부일	납부기한		⑦ 금액 (천원)	납부의무자		⑩ 과태료 납부일	이의제기	
				⑤ 당 초	⑥ 독 촉		⑧ 성 명	⑨ 주 소		⑪ 이 의 제기일	⑫ 법 원 통보일

※ 서식은 A4형으로 작성

구미시장귀하

신고접수증

귀하

[별지 제9호서식]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 번호	신고 연월일	신 고 내 용			사실확인		과태료금액		신고포상금 지급	
		위반 내역	위 반 업소명	대표자 성 명	확 인 통보일	회보일	감경 납부	일반 납부	포상 금액	포상자

- ※ 주 1) 위반내역은 위반일시, 위반행위 등을 간단하게 기재
 2) 감경납부액은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과태료를 소정의 납부기간
 에 납부하여 감경된 금액을 기재함
 3) 서식은 A4횡으로 작성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사실확인 요청서

신고번호 제 호

(위반자 인적사항)

① 주 소 :	② 상 호 명 :
③ 대표자 성명 :	④ 사업자등록번호 :

(위반행위)

① 언 제 :	년	월	일,	시	분
② 어 디 서 : 구미시		읍 · 면 · 동		번지	
③ 위반종별 :					
④ 상황설명 :					

상기와 같이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행위서가 년 월 일 신고되었기
통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 취 선

신고번호 제 호

① 위 신고사실(위반사실)을 인정합니다()

② 위 신고사실은 본인 매장에서 일어난 사실이 아닙니다()

③ 기타사항 : ()

구 미 시 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

(갑)				(처분기관 보관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위반행위자	성명		주 소				
과 태 료 부과금액	납기내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시중은행, 농협, 신협,수협,새마을 금고, 전국우체국	
	납기후	원		~			
위반일시	200 . . . :		위반법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0조			
위반내용			발부일자	200 . . .			
위반행위자 서명			주민등록번호		단속공무원 확인		
특기사항							

168mm×118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을)

(피처분자 통지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위반행위자	성명		주 소				
과 태 료 부과금액	납기내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납기후	원		~			
위반일시	200 . . . :		위반법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0조			
위반내용			발부일자	200 . . .			
위반행위자 서명			주민등록번호		단속공무원 확인		
※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41조제1항제3호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감경혜택(50%)을 받을 수 없으니 착오없이시기 바랍니다.							
구 미 시 장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병)

(수납은행 보관용)

과 태 료 납 부 서 (감경대상자용)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 소			
과태료금액	납기내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납기후	원		~		
세입자계좌번호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구미시 소재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농협						
수 납 인		구 미 시 장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정)

(개인 통지용)

과태료 납부영수증(감경대상자용)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 소			
과태료금액	납기내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납기후	원		~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구미시 소재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농협						
수 납 인						취 급 자 인
						취 급 자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무)

(처분기관 통보용)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감정대상자용)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 소			
과태료금액	납기내	원	납부기한	. . . 까지	납부장소	
	납기후	원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시중은행, 신한, 수협, 새마을금고, 전국우체국, 농협						
수납인		구 미 시 장 귀하				

168mm×118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확인서

(신고내용)

- ① 연 제 : 년 월 일, 시 분
- ② 어 디 서 : 구미시 읍·면·동 번지(사업장명 :)
- ③ 위반종별 :
- ④ 상황설명 :
- ⑤ 증거물 등 확보 여부 : (1회용품, 영수증,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기타)
- ⑥ 기타 참고사항 :

(피신고자 의견)

(피신고자 의견에 대한 신고자의 의견)

(담당공무원의 의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0 . . .

보고자 소 속 :

직 급 :

성명 : 인

구미시장 귀하